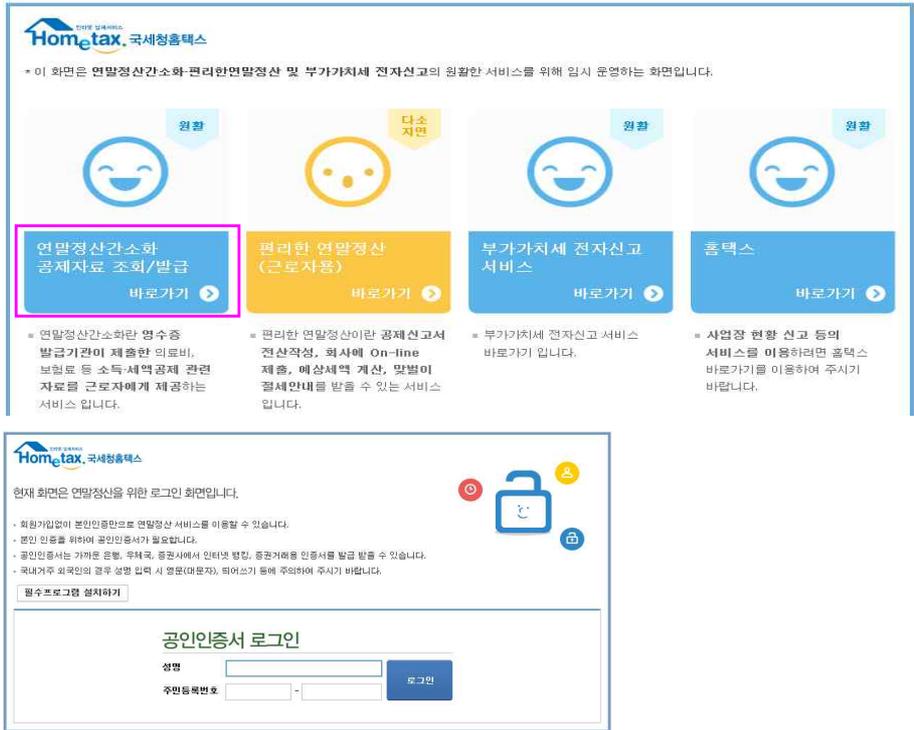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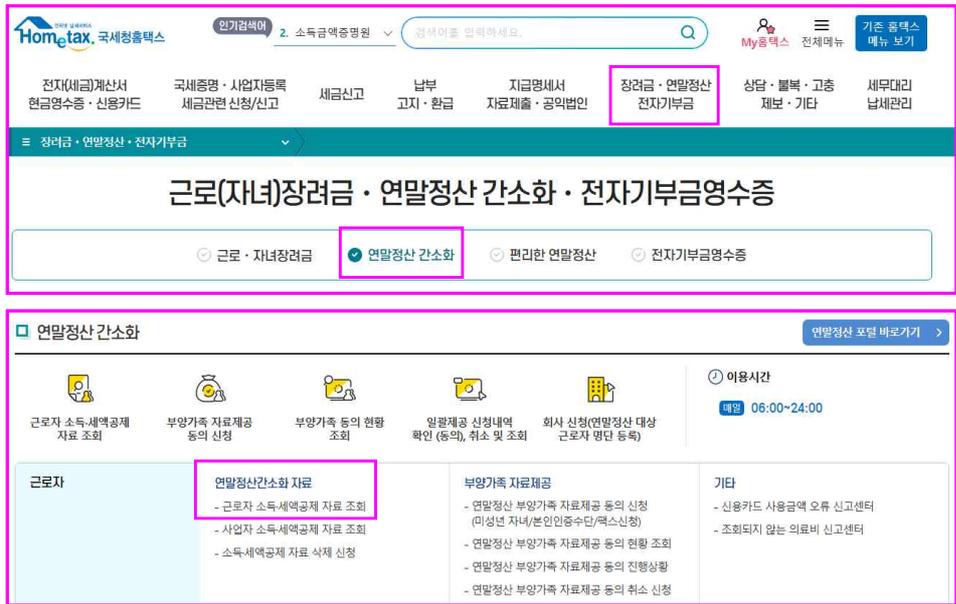


<별첨자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한 후 출력하여 제공하는 경우  
- PDF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회사 e-mail로 제공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검색 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2)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귀속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 후 2023.1.1.부터 2023.12.31.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전체선택'을 클릭하고, 연도중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로부터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재직 한 월을 각각 선택한 다음 각 항목의 지출금액을 조회하여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료는 2024.1.19.일까지가 수정제출 기간이니 1월 20일 이후에 출력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금액이 반영되오니 1월 20일부터 조회하여 1월 31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부양가족 동의하기와 부양가족 서류 제출

#### 1. 부양가족 동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관련 지출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반드시 부양가족 동의부터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조회하여야 부양가족 관련 연말정산 서류도 함께 출력이 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 '부양가족 자료제공'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으로 동의받으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서 주민번호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 2.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작년까지 조회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 2003.12.31.이전 출생자)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성년인 경우라면 해당 자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3.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예) 2023.1.1.~3.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3.7.15.~12.31.까지 B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실무상 7월분도 표시함)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귀속연도		2023년		전체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월 <input type="checkbox"/> 4월 <input type="checkbox"/> 5월 <input type="checkbox"/> 6월 <input type="checkbox"/> 7월 <input type="checkbox"/> 8월 <input type="checkbox"/> 9월 <input type="checkbox"/> 10월 <input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적분카드 등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2,523,410	936,880	7,744,834	996,536	34,380	20,526,865	1,687,620	154,000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월세액 (Monthly rent)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저축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fund)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장애인증명서 (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7,200,000	8,380,860	0	0	0	3,000,000	0	0건

- (3) 각 항목을 모두 클릭한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PDF 파일로,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면 종이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저장된 자료를 회사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면 되고 다운로드 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체크하지 않고 다운로드 하길 바랍니다.

조회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속연도 2023년 선택 후 '전체선택' 또는 '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던 월 선택'
- ② 모든 조회항목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지출금액 확인
- ③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 ④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저장한 후 이메일 등으로 자료 제공

HomeTax 국세청홈택스

1. 종합부동산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My홈택스 전체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약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① 귀속연도 2023년

전체월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③ 한번에 내려받기 인쇄하기 첨부하기 제공동의 현황

②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2,523,41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936,880	보험료 (Insurance) 7,744,834	의료비 (Medical Expenses) 996,536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34,380	신용카드 (Credit Card) 20,526,865	직불카드 등 (Debit Card) 1,687,62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154,000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7,200,000	주택자금 (Housing Funds) 8,380,860	월세액 (Monthly rent) 0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0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Venture investment trust) 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3,000,000	기부금 (Donation) 0	장애인증명서 (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0건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참고1> PDF를 내려받기 할 때 [재정] 또는 [비용] 항목으로 지정)을 선택하여 저장하십시오.  
- [월기]로 먼저 발행하고 다음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뒤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참고2> PDF를 열 때 **아도비비리더**를 사용하시고, PDF를 열 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참고3> **미결제 표시**  
[월인] 브라우저(크롬 등)로 연 경우, 아도비비리더 이외 뷰어를 사용한 경우 등 [해결] 아래의 간편화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단, [참고1]의 방법대로 저장한 PDF파일은 **미결제**로 보여더라도 회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가능

<참고4> PDF 파일의 **진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증서** 경우 **실제인**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화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리눅스는 지원하지 않음)  
- 아도비비리더를 먼저 설치한 후 간편화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상작동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육비/직업훈련비/교육구입비/학자금대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불카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택자금	<input type="checkbox"/> 월세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미련저축	<input type="checkbox"/>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123456-\*\*\*\*\*)

④ 내려받기 열기

### 신입사원 또는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도중에 새롭게 입사한 신입사원과 다른 근무지에서 이직한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근로자로 재직하는 월을 선택한 후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출력)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로 재직하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당국의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 (4) 참고로 다른 직장에서 이직하신 근로자분께서는 다른 직장에서 퇴사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이므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근무지에서 수령하셔서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